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2410.2) (자동갱신형)

# 특별약관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은「별표 및 참고」의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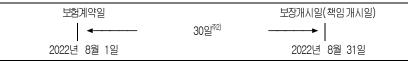
# 1-1.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수술을 받지 않은 날에 한하여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제5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 보험금(수술당일제외,검사비포함)(이하 「의료비보험금(수술당일제외,검사비포함)」라 합니다)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의료비보험금(수술당일제외,검사비포함)의 총합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반려견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이내 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단,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 결석의 경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에시아내>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계산]



주1)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 니다.

주2)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 결석의 경우 90일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지급할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보험금(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1일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당한 1일당 의료비 -1일당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보상하도액 중 적은 금액

#### <에시안내>

[반려견 의료비(치과 및 구강질 환포함)(수술당일 제외, 검사비포함) 계산]

-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보상비율 : 70%. 자기부담금 : 2만원
- ·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12만원 (수술미발생, 의료비 중 검사비 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12만원 2만원) × 7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 7만원
- · 011/12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32만원 (수술미발생, 의료비 중 검사비 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32만원 2만원) × 70%, 10만원] 중 적은 금액
  - = 10만원
- ⑥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⑦ 제1항의 「검사비」란 아래에 정한 검사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단, 제3조(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의 의료비 및 비용을 위한 검사는 제외합니다.
  - 1. 신체검사, 정형검사, 신경계검사, 안검사, 피부과검사 등 기본검사
  - 2. X-ray, 초음파검사, CT, MRI, 내시경검사 등 영상검사
  - 3. 혈액검사, 임상병리검사, 조직병리검사, 배양검사 등 실험실검사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용어풀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6.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 8.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0.반려견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1.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2.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및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 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2.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3.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4. 산후 문제행동, 수유에 따르는 칼슘 부족에 의한 경련 및 기타 임신·출산과 관련 된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 5. 손톱의 절제(며느리발톱의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손톱깎기 등의 처치비용
- 6. 미용으로 인한 비용
- 7.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가 아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 8.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치료제 및 Supplement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 문합니다)
- 9.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진드기, 모낭충의 제거 비용
- 10.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합니다),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 11. 가입동물의 이송비,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운송비포함)
- 12.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문제행동 교정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3.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 2형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렙토스피라 감염증, 심상사상충 감염증, 광견병, 켄넬코프

- 14. 기관협착, 누루관시술과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 15. 아래의 유전적 또는 발달이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뼈와 관절의 영역

Wobbler증후군, 팔꿈치 관절형성부전, 팔꿈치 관절 척골 이탈, 팔꿈치 관절요 골 이탈, 앞발 허리골의 만곡증, 대퇴골두 괴사증(Legg-calv-perthes disease)

나. 눈과 구강치

눈구멍 형성부전,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 변성의 진행, 하악골의 염증 성 질환. 이 및 턱의 형성부전

다. 하기와 같은 선천성 결손 선천성 난청, Achalasia(식도·직장 등의 이완 불능증), 구개열, 동맥관 개존증

<801¥01>		
	10015017	
배꼽하니아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질환과 신경증상을 일으킴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피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일으킴	
아데노바이러스 2형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소화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렙토스피라 감염증	랩토스피라 세균에 감염되어 황달, 신부전 등의 증상을 일으킴	
심장사상충 감염증	개시상충(기생충)이 심장이나 폐혈관에서 기생하며 호흡곤란, 혈액순환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킴	
켄넬코프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기침이나 발열 등 사람이 걸리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	
잔존유치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남이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	
잠복고환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증상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 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등록견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미등록견의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의료비 영수증 등)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시체 검안(檢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이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 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시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기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시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준용규정)

# 1-2. 반려견 의료비 확대보장(특정처치(이물제거))(수술당일제외, 연간2회한)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이물 섭취 치료를 목적으로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를 받은 경우 연간 2회에 한하여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에서「자기부담금」및「반려견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보험금의 1일 한도」를 제외한 금액을 아래에 정한 한도로 제5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의료비확대보장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지급기준	1회당 보상한도액
이물제거를 목적으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	200민원
이물제거를 목적으로 구토유도약물을 투약한 경우	20만원

- ② 이물제거(내시경)과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을 동일한 날에 받은 경우 이물제거(내시 경)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반려견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보험금의 1일 한도」란 반려견이 이물제거(내시경) 또는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를 받은 당일 1-1.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의 1일 한도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1-1.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 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관의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 ⑤ 회사가 지급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발생한 의료비에서 제4항에서 정한「자기부담금」및 제3항에서 정한「반려견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보험금의 1일 한도」를 차감한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1항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1-1.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1일 한도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사)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의료비 자기부담금 - 반려견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 당일제외, 검사비포함)보험금의 1일한도) × 보상비율}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단, 1-1.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1일 한도보다 적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에시아내>

·보상한도액 : 200만원(20만원), 보상비율 70% 기준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보상한도액 10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 보상비율 70% 기준

#### · 예시1

- 피보험자가 이물질제거(내시경)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151만원
-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관 지급금액 : 1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151만원 1만원 10만원) × 70%,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 98만원

#### · 011/12

- 피보험자가 이물질제거(구토유도약물)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31만원
-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판 지급금액 : 1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31만원 1만원 10만원) x 70%, 20만원] 중 적은 금액
  - = 14만원

#### · 여시3

- 피보험자가 이물질제거(구토유도약물)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10만원
- 반려견 의료비(치과및구강질환포함)(수술당일제외, 검사비포함) 특별약관 지급금액 : 6.3만원
- 보험금 미지급
- ⑥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용어풀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6.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 7.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 8.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9.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0.반려견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1.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12.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 및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 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2.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3.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4. 산후 문제행동, 수유에 따르는 칼슘 부족에 의한 경련 및 기타 임신·출산과 관련 된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 5. 손톱의 절제(며느리발톱의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손톱깎기 등의 처치비용

- 6. 미용으로 인한 비용
- 7.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가 아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 8.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치료제 및 Supplement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 문합니다)
- 9.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진드기. 모낭충의 제거 비용
- 10.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합니다),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 11. 가입동물의 이송비,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 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운송비 포함)
- 12.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문제행동 교정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3.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 2형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렙토스피라 감염증, 심상사상충 감염 증, 광견병, 켄넬코프

- 14. 기관협착, 누루관시술과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 15. 아래의 유전적 또는 발달이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뼈와 관절의 영역

Wobbler증후군, 팔꿈치 관절형성부전, 팔꿈치 관절 척골 이탈, 팔꿈치 관절요 골 이탈, 앞발 허리골의 만곡증, 대퇴골두 괴사증(Legg-calv-perthes disease)

나. 눈과 구강치

눈구멍 형성부전,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 변성의 진행, 하악골의 염증성 질환, 이 및 턱의 형성부전

다. 하기와 같은 선천성 결손

선천성 난청, Achalasia(식도·직장 등의 이완 불능증), 구개열, 동맥관 개존증

<용어풀이>			
배꼽하니아	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질환과 신경증상을 일으킴
피라인플루엔자 감염증	피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기침, 기래, 콧물 등의 증상을 일으킴
아데노바이러스 2형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소화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렙토스피라 감염증	랩토스피라 세균에 감염되어 황달, 신부전 등의 증상을 일으킴
심장사상충 감염증	개시상충(기생충)이 심장이나 폐혈관에서 기생하며 호흡곤란, 혈액순환 장애 등의 증싱을 일으킴
켄넬코프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기침이나 발열 등 사람이 걸리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
잔 <del>존</del> 유치	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남아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
잠복고환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증상

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 (이물제거(내시경) 및 이물제거(구토유발약물)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이물제거(내시경)」 란 반려견의 위장 등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동반하지 않고 내시경 및 내시경포셉을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이물제거(구토유발약물)」란 반려견의 위장 등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 또는 내시경을 동반하지 않고 구토유발을 목적으로 한 약물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등록견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미등록견의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고증명서
    - 가. 이물제거 목적으로 인한 치료여부가 확인 가능한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 나. 이물제거(내시경) 시행한 경우: 이물제거(내시경) 처치가 명시된 동물병원 진

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의료비 영 수증 및 내시경영상검사결과지 등

- 다. 이물제거(구토유도약물) 시행한 경우: 구토유도약물 처방이 명시된 동물병원 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의료 비 영수증 및 수의사처방전 등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1. "수의사"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사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3의2. "동물보건사"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이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하지 못하며, 「약시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기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시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다른 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의 지급보험금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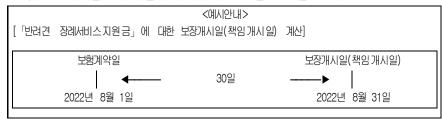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준용규정)

# 1-3. 반려견 장례서비스지원금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장례서비스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제2조 (반려견 장례서비스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반려견 장례서비스라 함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반려견 장례서비스지원금을 대신하여 반려견 장례서비스 제공업체가 직접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반려견 장례서비스 제공업체라 함은 회사와 반려견 장례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 장례서비스의 제공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제3조 (반려견 장례서비스의 제공)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보험수익 자가 반려견 장례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반려견 장례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보험수익 자에게 반려견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반려견 장례서비스의 제공시 필요한 비용(이하「반려견 장례서비스

- 비용」이라 합니다)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반려견 장례서비스지원금에서 대체하여 충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반려견 장례서비스지원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서 정한 반려견 장례서비스 이외의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비용을 반려견 장례서비스 제공업체에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반려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반려견 장례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는 반려견 장례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 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거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려견 장례서비스지원금을 지급하고 반려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반려견 장례절차를 마친 후 사망 사실을 통보한 경우
  - 2. 반려견 장례서비스 제공업체의 폐업 등으로 반려견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용어풀이>

####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6.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 손해(수의사의 소견 및 처방에 의한 경우도 동일)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9.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10.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 11. 사망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등록견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3. 미등록견의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하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등)
  -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에 열거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계약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다만, 제8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 정한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부활(효력회복)일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부활(효력회복)일의 이후부터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을 적용합니다.

# 제 9조 (준용규정)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2-1. 반려견 배상책임 특별약관

#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 1.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② 보상 관련 용어
  - 1.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2.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3.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4.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6.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

- 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용애포이>

####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해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기압류, 기집행, 기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기압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 책임
  -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2. 가입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3. 가입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5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6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금액을 보상한 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제8조 (손해방지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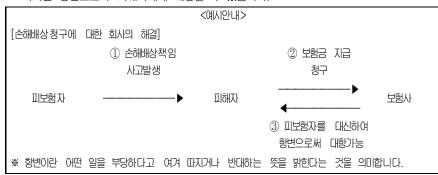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9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1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예시안내>

제3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회사는 1,000만원에 대한 대위권만 가지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12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 13조 (준용규정)